

학점인정심의 규정

제정 2017. 4. 17

개정 2017. 6. 1

개정 2017. 9. 25

개정 2018. 3. 20

개정 2019. 10. 28

개정 2022. 2. 21

개정 2024. 07.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학 전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함이며, 이에 학칙 제45조 6항에 의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7.01)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학점인정심의를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4.07.01)

② 위원회는 교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으로 스쿨당 교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07.01)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07.01)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및 심의적용범위) ① 학점인정심의대상은 전문학사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단, 정원의 전형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학칙 제45조 3항을 따른다.(개정, 2024.07.01)

② 학점인정 심의적용 범위 및 기준은 [별표1, 별표2]를 따르며 각 항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단, 기타 해당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07.01)

1. (삭제. 2024.07.01)

2. (삭제. 2024.07.01)

3. (삭제. 2024.07.01)

4. (삭제. 2024.07.01)

③ (삭제. 2024.07.01)

④ (삭제. 2024.07.01)

⑤ (삭제. 2024.07.01)

⑥ (삭제. 2024.07.01)

⑦ (삭제. 2024.07.01)

⑧ 학점인정심의를 통해 인정된 학점은 “학점”으로 인정하되 “성적”으로 산출하지 않는다. 다만, 유아교육과와 같이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위원회에서 동일한 교과목의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07.01)

⑨ (삭제. 2024.07.01)

제3조의2(심의 외 학점인정)

- ① 편입학의 학점 인정은 편입학 사정 시점 당시에 [별표 3.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의 학점 인정은 입학 사정 시점 당시에 최대 학칙 제57조 2항 3학년 수료학점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 ③ 동조 ①항과 ②항의 대상자는 입학 사정 당시 인정한 전적대학의 학점인정 외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 1. 학점인정 기준표] (삭제. 2024.07.01)

[표 2. 산업체 유관기준 인정학점](삭제. 2024.07.01)

[표 3. 자격증별 실습기준 및 인정학점](삭제. 2024.07.01)

제4조(인정 시기 및 절차) ① 학점인정심의회는 재학 중 1회에 한해 심의하며, 군복무 중 취득학점에 대해서는 복학 학기 종료 전에 추가 심의할 수 있다. 입학 이후의 학점인정은 대학 규정에 따른다.

② 학점인정의 절차는 학기개시일 후 정해진 기간 중 학생의 신청 및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에 대해 전공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개정, 2024.07.01)

제5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 유고 시는 총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직을 직무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회의록 및 회의참석 서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24.07.01)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8조(업무관리)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 업무는 교무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년도)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점인정 기준표]

항목	상세내용	관련 증빙서류
대학 학점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증명서(미졸업의 경우 제적증명서 또는 수료증) ● 성적증명서 ● 과목별 수업(강의)계획서 혹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구소 연구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의 산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것에 한한다.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연구경력 증명서 ● 산업체 근무경력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산업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프리랜서 경력	프리랜서 계약서 혹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의 실시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스쿨별로 관련 직무에서 활동한 프리랜서 증빙서류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학점인정 관련 서류일체 (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발급서류)
군 복무 취득학점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 가능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시설이나 입영 전 재학 대학이 개설한 원격강좌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인정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p>학점 취득에 대한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등

[별표 2. 산업체 유관기준 인정학점]

산업체유관기준	인정학점
유관 1급	100%(30학점)
유관 2급	80%(24학점)
유관 3급	60%(18학점)
유관 4급	인정하지 않음

[별표 3.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표]

편입 학년-학기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	
	편입학 사정 시 유사학과로 인정	편입학 사정 시 유사학과로 불인정
1학년 2학기	-전적대학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우리대학의 전공 및 교양 학점 졸업이수 기준 준수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최대 학칙 제57조 2항 1학년 수료학점까지만 인정함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상 “전공”으로 표기된 경우, 우리대학 전공학점으로 모두 인정 -그 외 학점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 -우리대학 전공별 졸업이수 기준 준수 -우리대학 교양과목 졸업이수 기준 미적용	일반선택으로 학칙 제57조 2항 1학년 수료학점까지만 인정함 -우리대학 전공별 졸업이수 기준 준수 -우리대학 교양과목 졸업이수 기준 미적용
3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최대 학칙 제57조 2항 2학년 수료학점까지만 인정함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상 “전공”으로 표기된 경우, 우리대학 전공학점으로 모두 인정 -그 외 학점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 -우리대학 전공별 졸업이수 기준 준수 -우리대학 교양과목 졸업이수 기준 미적용	일반선택으로 학칙 제57조 2항 2학년 수료학점까지만 인정함 -우리대학 전공별 졸업이수 기준 준수 -우리대학 교양과목 졸업이수 기준 미적용